

의안 번호	제3564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월 31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2월 1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김포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자 함.
- 자살예방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추가하여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“건강한 삶을 보장” 에서 “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” 으로 변경하여 자살에 대한 지역사회 의 책무와 예방정책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자살예방시행계획 내용 추가(안 제5조)
 -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- 아동·청소년·청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- 다. 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추가(안 제6조)
- 라. 그 밖에 용어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